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예산의 목적외 사용)
 기관명 흔들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 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흔들유치원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연합회비 지출 등 총 10건, 2,838,060원을 유치원 운영 및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흔들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거래일자	적요	지출액(원)	채주
2016.04.07	축화분	74,000	○○농원
2016.03.22	연합회비	650,500	○○○(○○유치원)
2016.12.30	연합회비	200,500	○○○
2017.05.16	연합회비	650,500	○○○
2017.06.20	연합회비	100,500	○○○
2017.07.03	연합회비	100,500	○○○
2018.05.15	연합회비	650,500	○○○
2018.06.14	연합회비	120,500	○○○
2016.06.08	위생교육미이수과태료	160,000	일산동구청
2016.03.~2017.05.	사학연금 연체금	130,5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합 계	2,838,060	

※ 부적정 집행액 2,838,060원 감사처분 전 보전완료

조치할 사항 **힌들유치원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부정당채주 지급)
 기관명 흰돌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5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흰돌유치원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정당 채주에게 교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선 결제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교직원 개인계좌로 총 80건, 19,036,330원의 거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흰돌유치원 부정당 채주 지급 내역

회계연도	수취인	건수	지급액	비고
2016	○○○	19	2,611,160	
	○○○	8	549,630	
	○○○	4	1,252,920	
2017	○○○	1	132,500	
	○○○	25	7,626,130	
	○○○	2	69,020	
2018	○○○	21	6,794,970	
합계		80	19,036,330	

조치할 사항 흰돌유치원설립자 및 원장은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통학차량 및 현장체험학습차량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힌돌유치원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를용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지입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35조(계약의 원칙) 및 제36조(계약담당자)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계약담당자는 유치원의 원장이며, 계약의 원칙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성실히 체결하여야 하며, 제3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유치원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힌돌유치원에서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주)○○관광, (주)○○투어와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차량기사인 ○○○, ○○○에

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차량을 운영하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이 아닌 개인과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이 있다.

[표3] 견학차량비 지급 내역(이체수수료 포함)

학년도	수취인	거래건수	연간 지급액	비고
2016	○○○	16	3,248,000	
	○○○	16	3,623,000	
	○○○	8	360,000	
	○○○	20	1,074,000	
	○○○	5	202,500	
2017	○○○	26	2,329,000	
	○○○	35	9,653,500	
	○○○	1	60,500	
2018	○○○	22	1,177,000	
	○○○	1	70,500	
	○○○	4	271,000	
	○○○	1	312,500	
	○○○	33	8,245,300	
	○○○	1	100,500	
	○○○	1	74,500	
	○○○	1	80,500	
	○○○	1	80,500	
	○○○	3	376,000	
합 계		195	31,338,800	

조치할 사항 **흰돌유치원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